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5-103
--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8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관행적 인감증명 요구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및 구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(안 별지 제7호서식)

나.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」 제27조의3에 근거한 용어 정비(안 제17조) 등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-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: 2025. 6. 12.~7. 2.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 결과: 원안 동의

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
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: 개선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제2호 중 “**장애등급**”을 “**장해등급**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**장제보상**”을 “**장례보상**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**청구시**”를 “**청구 시**”로, “**9인**”을 “**9명**”으로, “**디지털재정과장, 주민생활복지과장**”을 “**예산정책과장, 복지정책과장**”으로 한다.

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7호서식]

요양 [], 장해 [], **장례** [], 유족 [] 보상청구서

※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※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처리기간 30일
사고자	소속		전화번호
	주소		
	성명	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
청구인	주소		전화번호
	성명	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
	사고자와관계		
사고경위 및 요양	사고(사망)일시		
	사고(사망)장소		
	사고경위 1. 화재 【 】 2. 구조 【 】 3. 구급 【 】 4. 기타 【 】		
	요양(진단)병원		요양(진단)부위
	요양(진단)결과		요양기간
청구금액	요양보상		장해보상
	장례 보상		유족보상
	청구금액		

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」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 : (서명 또는 인)

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.

년 월 일

단장 : (서명 또는 인)

재난관리총괄과장 귀하

(뒤쪽)

제출서류	1. 요양보상(①,③,④,⑦,⑧), 2. 장해보상(①,②,③,④,⑦,⑧) 3. 장례보상(③,④,⑤,⑥,⑦,⑧), 4. 유족보상(③,④,⑤,⑦,⑧) ① 의사진단서, 진료영수증, 진료내역서 각 1부. ② 장해증명서류 1부.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.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(사고발생 보고서, 목격자 진술서 등) 1부. ⑤ 사망진단서(사망증명 서류) 1부.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. ⑦ 통장사본 1부.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(필요시) 1부.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요양·장해보상(주민등록등본,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) 장례·유족보상(가족관계증명서· 신분증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신청인	처리기관 구 재난관리 담당부서
신 청	경 유 (자율방재단장) ▼ 접 수 (재난관리 담당과) ▼ 심 의 (재해보상심의위원회) ▼ 건 의 (재난관리 담당과장) ▼ 확 정 (구청장)
지 급	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재해보상) ① 「자연재해 대책법」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단원 또는 유족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. 다만,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.	제17조(재해보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장해보상: 해당 단원의 <u>장애 등급</u> 이 확정된 날	2. ----- <u>장해 등급</u> -----
3. <u>장제보상</u> 및 유족보상 :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	3. <u>장례보상</u> ----- -----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재해보상 <u>청구시</u> 위원장을 포함하여 <u>9인</u> 이내로 구성하되, 행정지원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재난관리총괄부서장, <u>디지털재정과장</u> , 주민생활복지과장, 의약과장, 재해보상 청구 단원의 거주	③ ----- --- <u>청구 시</u> ----- 9 <u>명</u> ----- ----- <u>예산정책과장,</u> <u>복지정책과장</u> ----- -----

지 관할 동장, 권역별 선임동장을 위원으로 한다.

④ ~ ⑥ (생략)

[별지 제7호서식]

요양[], 장애[], 장애[], 유족[]보상청구서		
※ 위쪽의 항목서특함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(필수)		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90일
사고자	소속	전화번호
	주소	
	성명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
청구인	주소	전화번호
	성명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
	사고자와관계	
사고경위 및 요양	사고(사망)일시	
	사고(사망)장소	
	사고경위 1. 화재[] 2. 구조[] 3. 구급[] 4. 기타[]	
	요양(진단)병원	요양(진단)부위
	요양(진단)결과	요양기간
청구금액	요양보상	장해보상
	장제보상	유족보상
	청구금액	
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」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.		
청구인 : (서명 또는 인)		
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.		
단장 : (서명 또는 인)		
재난관리총괄과장 귀하		

제출서류		수수료
1. 요양보상(①,②,③,④,⑤), 2. 장해보상(①,②,③,④,⑤) 3. 장제보상(①,②,③,④,⑤), 4. 유족보상(①,②,③,④,⑤) ① 의사진단서, 진료영수증, 진료내역서 각 1부, ② 장제증명서류 1부,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,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(사고발생 보고서, 목격자 진술서 등) 1부, ⑤ 사망진단서(사망증명 서류) 1부,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, ⑦ 통장사본 1부, ⑧ 은행위탁회 요청서(필요시)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		없음
요양·장제보상(주민등록등본,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) 장제·유족보상(가족관계증명서·인감증명서)		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		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와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		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
처리절차		
신청인	처리기관 구 재난관리 담당부서	
신청	경유 (지출방재단장)	
	접수 (재난관리 담당과)	
	심의 (재해보상심의위원회)	
	건의 (재난관리 담당과장)	
지급	환정 (구절장)	

-----.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[별지 제7호서식]

요양[], 장애[], 장애[], 유족[]보상청구서		
※ 위쪽의 항목서특함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(필수)		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90일
사고자	소속	전화번호
	주소	
	성명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
청구인	주소	전화번호
	성명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
	사고자와관계	
사고경위 및 요양	사고(사망)일시	
	사고(사망)장소	
	사고경위 1. 화재[] 2. 구조[] 3. 구급[] 4. 기타[]	
	요양(진단)병원	요양(진단)부위
	요양(진단)결과	요양기간
청구금액	요양보상	장해보상
	장제보상	유족보상
	청구금액	
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」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.		
청구인 : (서명 또는 인)		
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.		
단장 : (서명 또는 인)		
재난관리총괄과장 귀하		

제출서류		수수료
1. 요양보상(①,②,③,④,⑤), 2. 장해보상(①,②,③,④,⑤) 3. 장제보상(①,②,③,④,⑤), 4. 유족보상(①,②,③,④,⑤) ① 의사진단서, 진료영수증, 진료내역서 각 1부, ② 장제증명서류 1부,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,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(사고발생 보고서, 목격자 진술서 등) 1부, ⑤ 사망진단서(사망증명 서류) 1부,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, ⑦ 통장사본 1부, ⑧ 은행위탁회 요청서(필요시)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		없음
요양·장제보상(주민등록등본,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) 장제·유족보상(가족관계증명서·인감증명서)		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		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와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		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
처리절차		
신청인	처리기관 구 재난관리 담당부서	
신청	경유 (지출방재단장)	
	접수 (재난관리 담당과)	
	심의 (재해보상심의위원회)	
	건의 (재난관리 담당과장)	
지급	환정 (구절장)	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행정지원국 구민안전과 김주향
연 락 처	02-3153-1644